

제13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 12. 13(수)

'07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종 목

『07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06년 12월 12일
- 제출자 : 거창군수(상하수도사업소)
- 회부일자 : 2006년 12월 12일

II. 제안이유

- '05년 말 기준 거창읍의 하수관거정비율이 32%에 불과하며, 하수관거 시설을 2010년까지 80%로 시설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예산확보 노력과 자체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 환경부의 시책사업(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 우선추진과 수혜인구 많은 시 우선지원, 우리 군의 재정부족 등으로 하수관거 정비율 제고는 답보상태임.
(매년 20억 투자 시 19년 이상 소요)
- 금번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민간투자사업)방식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고지원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므로,
- 우리 군의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자체부담금을 20년간 상환 의무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BTL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사업명 : '07 강북지구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 사업개요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상림, 중앙, 대동, 가지, 서변리 일원
(거창읍 강북하수처리구역)
 - 사업량 : 하수관거 정비 L=39.4km
배수설비 정비 6,500개소, 유지관리 모니터링시스템 1식
 - 사업기간 : 2007. 11 ~ 2010. 12(38개월)
- 총사업비 : 37,063백만원(국비 : 재정사업 국고지원비율 70% 준용)
 - 부가세 제외, '05. 10. 기준 현재 불변가격
 - 정부지급금의 산정방식에 의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산출 금액으로 가감조정
- 선부담자 : 사업시행자(민간 투자자)
- 후상환자 : 주무관청(거창군)
- 상환방법 : 시설준공 후 20년 원리금 상환
(이자는 5년만기 국고채금리 + a(가산율) 수준)
- 자금계획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추정)	국비(70%)	지방비(30%)	비 고
37,063	25,944	11,119	지방비 부담액의 50% 수계기금 지원 계획

※ 의무부담 총액에 따라 자금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국비지원액 변동 가능

IV. 검토의견

- BTL사업은 '05년도 정부의 뉴딜정책사업으로 국민복지와 관련된 15개 사업에 '05~'07기간 중 26조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어 교육, 환경, 군 주거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투자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정부사업에 활용하여 새로운 정부의 투자모델로 정착하고 있는 임대형 민자사업임.
- 정부의 BTL사업투자 규모는 2005년도 6조원, 2006년도 9조 9천억원, 2007년도 9조 9,288억원이고 이 중 환경부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5년도 17개 시·군 1,570km에 1조원, 2006년도 29개 시·군 3,627km에 2조 3,070억원, 2007년도 15개 시·군 1,539km에 1조 3,070억원을 투자계획으로 대부분의 시·군에서 BTL사업 유치 경쟁 중에 있어 2007년도 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된 것은 집행부의 노력결과로 생각됨.
- 우리 군의 2005년도 말 기준 거창읍 하수관거 정비율은 32%로써 2005년 완료한 강남지구를 제외한 강북지역 대부분은 오수와 우수가 합류되어 흐르는 재래식 하수도로서, 여름철에는 악취발생과 해충의 서식지로서 주민보건위생을 저해하고 있고, 집중호우 시에는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와 대부분의 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어 수질 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 거창하수처리장의 하수유입농도는 BOD 기준 설계유입 수질은 150ppm이나 연평균 유입수질은 80.2ppm 정도로서 저농도에 가까운 실정으로 여름철에는 “맹물처리장”이 되어 미생물에 의한 하수처리가 곤란할 소지도 있어 하수관거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며

금년부터 우리 군에 적용되어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도 금번 하수관거정비를 위한 BTL사업 유치는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하여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건설 업체의 참여가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도 중요하므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협상과정에서 우리 군의 여건 반영이 매우 중요하므로 집행부의 기술인력 증원배치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 2중 굴착방지를 위하여 “노후 상수도관”의 교체사업비도 대폭 증액 확보하여 상하수도 관로정비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여 사업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예산 집중투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V.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2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제출)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 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다음 연도 중에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